

1. 개정 이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안 제37조제3항 개정)
-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2 개정)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바목 개정)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46조의2 및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무

별표3 바목 중 “법 제22조 또는 법 제40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22조, 법 제40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6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 ② (생략)					① ~ ② (생략)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 ----- ----- ----- <u>100분의 20</u> ----- -----.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략)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현행과 같음)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설>					<u>12의2. 법 제46조의2 및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무</u>				
13. ~ 22. (생략)					13. ~ 22. (현행과 같음)				
[별표3]					[별표3]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 22조 또는 법 제 40조 제 1항 (법 제 42조 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98조 제 1항 제 4호				바. 법 제 22조, 법 제 40조 제 1항 (법 제 42조 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46조의 2 제 2항 --- --- --- --- --- ---	(좌 동)			
1) 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1)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45	70	2)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